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484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932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48424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A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B과 피고 사이에 2019. 5. 2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0.(이후 2020. 4. 17.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B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7. 4. 2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C는 2019. 11. 11.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2. 4.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원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2. 27. D은행에 보증금액 등 262,004,873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652,482원을 회수하였으며, 약정손해금율은 2017. 5. 22.부터 연 10%, 2020. 6. 1.부터 연 8%이고, 대지급금은 976,300원이다.

마. B은 2017. 5. 19. E와 사이에, E로부터 과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40,000,000원, 존속기간 2017. 6. 7.부터 2019.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15. H와 사이에, H로부터 과천시 I,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¹⁾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B과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9. 5. 2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B은 2019. 5. 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증여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262,328,691원(= 대위변제금 262,004,873원 - 회수금액 652,482원 + 대지급금 97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2019. 5. 2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2019. 5. 22.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1) 차임, 존속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